
라틴아메리카의 국경과 인적 이동

나네 리베로나 콘차

칠레 아르투로 프랫 대학교 국제연구소 연구원

원제와 출처: Nanette Liberona Concha, "Fronteras y movilidad humana en América Latina",
Nueva Sociedad, No. 289, septiembre–octubre de 2020, pp. 49–58.

핵심어: COVID-19, 국경, 인적 이동성, 이주자 밀수

이 세상에서 국경과 인적 이동성의 관계는 COVID-19로 인해 가장 주목받는 주제가 되었다. 이 양자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학제로부터 분석이 나왔다. 물리적 폐쇄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행정적 국경이 이 팬데믹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인적 이동은 오직 삶의 형질만이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독보적인 추진력을 지닌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동시에 이주와 관련된 일반화된 행정의 국제적 (비)기준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였다. 보건을 포함해 모든 통제의 수단을 국제적으로 가동함에도 불구하고 인적 이동이 월경(越境) 능력을 과시하는 역사적 순간에 와 있다. 국가에서 국내외적으로 이주

흐름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경고음이 울렸다. 주권과 민족주의와 연관된 국경의 안보 역할은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폭력의 형태를 허용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자, 노동자, 혹은 난민 신청자는 감염에 무방비한 상태로, 출신국뿐 아니라 통행국, 이주 목표국의 정부로부터도 버림받게 되는 삶의 위협을 느낀다.

국내외 기관이 이주자들에게 COVID-19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려는 움직임¹⁾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11가지 형태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a) 국경 폐쇄와 고강도 경비, b) 과도한 선택적 민족주의, c) 남쪽을 겨냥한 연이은 폭력 d) 권한이 박탈되거나 비합법화된 사람들, e) 망명과 난민 권한의 중지, f) 통제의 방식으로 두려움 확산, g) 감금 공간의 건설과 인적 희생, h) 역이민, i) 송환 가능한 핵심 노동자, j) 국경에 있는 아동과 성인, k) 이주자 투쟁과 연대망, 인종차별에 대한 반응.

이런 상황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주는 국경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행위의 핵심적 주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렇듯 국가들의 의료 통제는 아메리카 전역에서 협력적 방식으로 이주 통제의 효과를 만들었다. 이 대륙의 다양한 층위에서 유사한 사회적 응답이 나온 것이다. 이것은 이주자의 동기와 행동과 관련해서 새로운 중심의 이해를 열었다. 이들 이주자는 바이러스나 인종주의, 실직과 같은 사회적 효과 측면에서 극도로 취약한 계층으로 밝혀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 국경 질서는 유지되고, 이주자들이 여정 중에 끊임없이 부딪히는 장애, 규제, 폭력의 역할이 국경에서 강화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COVID-19에도 불구하고 이동하는 사람들의 취약함과 위험이 라틴아메리카 전역의 국경 폐쇄로 인해서 어떻게 확대되었는지를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1) COVID-19, 아메리카에서의 (비)이동성 프로젝트, <www.inmovilidadamericas.org>.

가장 큰 위험들 중 하나는 이주자 밀수로 알려진 것인데, 신체와 이동성에 관한 인류학 분야에서 연구한 내용이다. 인력밀수를 분석하는 중요성은 국가가 이것을 이주자의 범죄와 연관 짓는다는 데 있다. 이에 맞서서, 인력밀수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가해진 위험과 폭행, 비합법화가 일어나는 국경과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세 가지 핵심적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a) 인력밀수는 ‘비합법적인 이주민 수송’을 의미하는 ‘인력 수송의 밀도’를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되는 형사적 명칭이다. b) 인력밀수와 관련된 불법적 월경은 이주 정치학에 내재된 구조적 인종차별주의에 의해 악화된다. c) 이주의 초기나 과정에서 인력밀수에는 자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강제된 이주로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인력 수송의 밀도

‘인력 수송의 밀도’라는 개념은 이주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 코요테²⁾나 인력밀수에 의존하는 비합법적 이동의 경험을 말한다. 목적 국가나 통행 국가에서 불법적 삶만큼 불법적 월경 또한 비자발적 상황 아래 발생하기 때문에, 비합법적 이동의 개념은 행정적 비합법성을 양산하는 사법적 영역 내에서 논의된다. 인력밀수를 전통적 방식으로 이해하는 비평가들은 비합법적 이주를 통해 새로운 축적 제도를 만드는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의 책임에 논쟁의 핵심이 있다고 믿는다.³⁾

2) David Spener: 《El apartheid global, el coyotaje y el discurso de la migración clandestina: distinciones entre violencia personal, estructural y cultural》 en *Migración y Desarrollo* No 10, 2008.

3) Sandro Mezzadra y Brett Neilson: 《Between Inclusion and Exclusion: On the Topology of Global Space

인력 수송의 밀도는 불법적 이동 전략을 조성하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차원에서 만들어진다. 이주자의 취약성을 악용하려는 다양한 주체들 중에서 이동 전략을 실행하는 자의 능력이 제일 앞설 것이다.⁴⁾ 이 상황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상황 통제의 상실은 국경을 넘기 위해 코요테나 ‘인력수송망’에 의존하거나, 국경경찰의 승인에 기댄 결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밀매와 인력밀수는 육지, 바다, 항공을 통한 이주자의 불법적 수송에 관한 프로토콜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물질적 혜택이나 재정적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얻을 목적으로 영주권, 혹은 국적을 지니지 않은 사람이 그 국가에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것”⁵⁾이다. 인력밀수에 관한 이런 편협한 정의는 사법적 처벌에 초점을 둔 분석이 국제적으로 유포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인력밀수 대상을 불법적 월경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나아가 ‘불법이민자’라는 잘못된 용어를 양산해서 국내법을 거스르는 탈국가적 범죄자라는 뜻으로 통용되도록 한다.⁶⁾

칠레에서 비합법적 입국은 1975년에 생긴 외국인 법령 1094조에 의해 범죄로 간주한다. 또한 2011년 만들어진 법령 20507조에 의해서도 이주자의 불법적 수송과 인신매매는 범죄로 인정된다. 게다가 이것은 주권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경로를 통해 입국하다가 경찰력에 의해 체포된 사람들은 자신이 그 대상이 된 인력밀수를 고발할 수 없다. 오히려, 비합법적인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 마땅한

and Borders》en *Theory, Culture & Society*, 2013.

4) N. Liberona, Carlos Pinones y Haroldo Dilla: 《De migración forzada a tráfico de migrantes: migración clandestina en tránsito de Cuba hacia Chile》 en *Migraciones Internacionales* vol. 12, en prensa.

5) Organización de las Naciones Unidas: 《Protocolo contra el Tráfico Ilícito de Migrantes por Tierra, Mar y Aire, que complementa la Convención de las Naciones Unidas contra la Delincuencia Organizada Transnacional》, onu, Ginebra, 2000.

6) Francisca Barros Sanchez: *El tráfico ilícito de migrantes y la trata de personas: comparación y evaluación de las políticas en Chile*, anepe, s./l., 2018.

사법적 절차 없이 행정적 추방 대상이 되는 것이다.⁷⁾ 라틴아메리카 다른 나라에서도 강조하는 사법적 처리는 ‘비합법적인 이주민 수송’ 경험의 강도를 파악하는 것을 막는다. 이 경험은 비자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주자들은 대안으로서 제3자의 도움을 통해 통행 국가나 도착 목표 국가에 비합법적으로 입국하고자 한다.⁸⁾

이런 국경 간 이동의 경험은 ‘인력 수송의 밀도’라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상황 내에서 전개된다. 먼저 이 밀도를 경로 중에 이주자의 움직임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양한 측면에 의해 만들어진 문제이지만 이주자는 이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을 통과하기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엄격한 의미에서 “수송은 일시적 거주 혹은 양국 사이의 여정으로 이해된다.”⁹⁾ 그러나 이 개념에 대한 심화 연구에서는 필요한 서류 없이 여러 국가를 통과하는 이주 경로를 의미한다. 이런 연구는 이주자의 인권, 취약함, ‘인도적’ 위기, 정치학과 관련된 문제를 보여준다.¹⁰⁾ 이와 함께, 인력 수송이 고통스런 경험임을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틀에서 구조화된다. 그래서 이 경험은 일자리라는 사회적 영역에서 이주자들을 저렴하고 유연하며 착취하기 쉬운 노동력으로 이용하는 정치경제적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다. 인력 수송의 또 다른

7) Francisco Jara Bustos: 《La expulsión de extranjeros en Chile. Un análisis desde el derecho internacional de los derechos humanos》 en Marcela Tapia Ladino y N. Liberona Concha (eds.): *Elafán de cruzar las fronteras. Enfoques transdisciplinarios sobre migraciones y movilidad en Sudamérica y Chile*, Ril Editores, Santiago de Chile, 2018.

8) Jacques Paul Ramírez Gallegos y Soledad Álvarez: 《‘Cruzando fronteras’: una aproximación etnográfica a la migración clandestina ecuatoriana en tránsito hacia Estados Unidos》 en *Confluente* vol. 1 No 1, 2009.

9) Andres López y Jana Wessel: 《Migración haitiana en tránsito por Ecuador. Comentario internacional》 en *Revista del Centro Andino de Estudios Internacionales* No 17, 2017, p. 20.

10) Ernesto Rodríguez, Claudia Fernández Calleros, Rubén Luna González y Edyam Rodríguez García: *Bibliografía sobre migración en tránsito irregular 1990-2015*, itam, Ciudad de México, 2016.

차원은 이동 중에 있는 사람들이 처한 비시민이라는 사회적 지위이다. 그들은 시민권의 위기를 겪으며 사회적 권리를 상실한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인력 수송의 형식은 코요테 제도가 지역 차원에서 실행되면서 만들어 진다. 이것은 비합법성 내에서 가능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운송되는 사람들이 희생당하며 착취당하는 일이 포함된다.¹¹⁾

그래서 ‘비합법적인 이주민 수송’은 훨씬 더 취약하다. 본국과 목적지 국가 사이의 이동 경험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에 빠뜨리는 상황으로 넘친다. 팬데믹 시기에 이동 중에 있는 사람들은 감염되거나 버림받는다. 이 대륙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동 중 인구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일자리나 마실 물, 숙소도 없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놓였다. 더구나 정부 당국의 방만함으로 인해 집에 돌아갈 의도가 있을 때에도 안전한 귀환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게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출신의 사람들과 멕시코 출신 송환자들, 아이티와 쿠바, 남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에서 미국을 향해 이동 중인 사람들, 모두 이 대륙의 여러 국경 사이에 좌초되어 있다. 이 상황은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혹은 칠레와 볼리비아,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국경에서도 반복된다. 베네수엘라 출신의 인구가 가장 취약한 사람들로서, 본국으로 향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건거나 차로 이동하면서 중간에 멈춰서 있다.¹²⁾ 그러나 이동하는 사람들은 국경을 건널 목적을 위해 인력밀수에 의존하면서 위생 저지선에 도전한다.

물론 국제적 차원으로 보면, 이주자 수송의 가장 큰 피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결과처럼 수송되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남아메리카에서 이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정 중간에 버려지거나 극심한 탈수로 인해

11) N. Liberona: ‘La frontera cedazo y el desierto como aliado, Prácticas institucionales racistas en el ingreso a Chile’ en *Polis* No 42, 2015.

12) V. 《(In)Movilidades en las Américas》, cit.

사망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다. 이런 현상이 칠레와 페루 국경이나, 칠레와 볼리비아 국경 사이에서 확인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적 폭행도 젠더 폭력의 일종으로서 자주 발생하는데, 여성 이주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피해가 유인, 모욕 혹은 폭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여기에 수송되는 사람들이 겪는 인종차별이 더해진다. 아프리카계 인구나 원주민, 여성은 코요테나 경찰의 성적 폭력을 겪는다. 타인을 계층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만드는 인종차별이 발생한다.

수송되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권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국경의 다양한 의미를 논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무지를 확산하는 한 가지 근본적인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 개인의 명예와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공격”으로 표현된다. 우리는 ‘비합법적인 이주민 수송’에 있어서 주체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무지함의 영향에 놓인 사람들이 신체의 비이동성이라는 형식으로 이동성을 부정 당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서로 다른 위도의 국가들 사이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이주자 그룹이 이동 불허에 직면하면서 이런 비이동성이 확실히 두드러진다. “일시적으로 거주한 국가나 피난처로 삼은 국가들에서 경제적 침체가 생겼기 때문에” 대륙 전체에서 역이민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공식적 일자리의 원천이 끊기면서 수천 명의 비합법적 이주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돌봄과 원조를 받을 가족과 사회망을 재건한다.”¹³⁾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비합법 이주자들이 멕시코를 떠나 자신의 출신 국가로 향하며 비이동성의 상황을 겪는다. 이 같은 상황을 니카라과 사람들이 코스타리카에서, 아이티 사람들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안데스 지역에서 자신의 나라들로 귀환하면서 경험한다.

13) Ibid.

구조적 인종주의의 제한적 이주 정치학

그러나 인력밀수만이 비합법성을 낳는 것은 아니다. 국경도 비합법화 메커니즘으로서 근본적 역할을 한다. 국경은 비자 제도로 인해 이동성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혹은 난민 신청이 있을 경우 그 권리를 거부하기도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400만 이상의 베네수엘라 이주자들 중에서 일부는 망명을 신청했다. 많은 국경에서 이런 신청을 거부한 결과 생겨난 비극을 이해하는 것이 이 문제에 핵심적이다. 이 비극은 실제 국경 폐쇄를 통해 악화되었고, 결국 난민과 망명 신청 수용은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이주자는 비합법적 경로나 부적절한 길로 국경을 넘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들이 이주 계획을 거의 완성하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칠레에서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465% 증가한 인력밀수는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쿠바, 베네수엘라 출신의 사람들로 이뤄졌다. 칠레의 이주 정치학은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비자 제시를 요구함으로써 입국을 제안해 왔다. 이를 통해 구조적 인종주의를 확인하게 된다. 구조적 인종주의는 “인종적 종족적 그룹 사이에 불평등을 만들고 강화하기 위한 ‘거시적 차원의 제도, 사회적 힘, 제도, 이데올로기, 내부 과정’의 총합으로 정의된다.”¹⁴⁾ 이런 의미에서 이주 정치학은 비자 제도를 통해서 훨씬 더 비합법화되기 쉬운 인종적으로 차별받는 이주자를 만들어낸다.

지역적 이주 정치학에 대한 분석을 보면, ‘범죄’ ‘불법’ ‘비합법’같은 카테고리를 발전시켜 정당화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내법에서 ‘이주자 밀수’에 대한 규정은 조직범죄에 맞선 UN 협약에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다. 이런 카테

14) Gilbert C. Gee y Chandra L. Ford: 《Structural Racism and Health Inequities: Old Issues, New Directions》 en *Du Bois Review: Social Science Research on Race* vol. 14 No 4, 2010.

고리는 UN에 소속된 국제기관에서 나온 것으로 이주자를 위한 국제 조직(OIM)도 국가들이 다국가적 협약을 강화하고 비준하는 이런 정치학을 실현하도록 요청한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의 경우가 그렇다. 에콰도르는 인신매매와 인력밀수를 안전의 문제로 인식했고, 그래서 그것과 싸우면서 통제했다.¹⁵⁾

이주 정치학은 비합법적 이주를 만든 이후에 그 흐름이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범죄시한다. 이런 상황을 아이티 이주 문제를 다루는 데서 확인하게 되는데, 이곳 국민들은 2017년부터 브라질, 멕시코, 칠레 같은 나라들로 이주했다. 이주 정치학은 이런 방식으로 ‘질서 있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개념을 표방한 ‘이주 통치’ 현상에서 떨어진다. 오히려 최고의 유용성을 얻어내기 위해 인적 이동을 유도하고 통제할 목적으로 비합법적 이주를 양산해 위협으로 작용하게 만든다.¹⁶⁾

이런 메커니즘이 국경의 의미 중 또 다른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이주 인구를 계층화할 목적으로 국가의 인종주의를 서서히 유포시켜 행사하는 것이다. 이주 인구 중에는 합법화 절차를 밟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 혹은 사회에 안착해 고가치 노동에 종사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국경은 사람들의 신체에 각인되어, 삶의 장소와 사회관계 내에서 접근 가능한 일의 종류에 반영된다.

인적 이동성의 착취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강제적 이주

마지막으로 인력밀수에는 이주하는 동안이나 이주 계획 초기에 자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이주자들을 처벌하기

15) Martha Ruiz y Soledad Álvarez: ‘Excluir para proteger: la ‘guerra’ contra la trata y el tráfico de migrantes y las nuevas lógicas de control migratorio en Ecuador’ en *Estudios Sociológicos* vol. 37 No 111, 2019.

16) Eduardo Domenech: ‘Las políticas de migración en Sudamérica: elementos para el análisis crítico del control migratorio y fronterizo’ en *Terceiro Milenio: Revista Crítica de Sociología e Política* No 1, 2017.

위한 프로토콜에 존재하는 당연한 공감대에서는 그렇지 않다. 밀수 방식으로 이주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승한다. 이주가 극히 불안정한 조건에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시급하게 이주할 필요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빚을 진다. 물론 밀수자나 코요테와 합의한 사람들이 지불한 초기 비용은 최종 비용과 결코 같지 않다. 비용은 항상 올라가고 이주자는 자신의 밀수 고용인들에게 결국 의존하게 된다. 여행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예상한 비용이 이 계획을 마무리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드물다. 반대로, 이주 동안에 목적지에 잘 도착하라는 확신을 잃어간다. 왜냐하면 착취와 폭력, 위험과 속임의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요구받으며 자신의 재산과 꿈으로부터 멀어져 간다.

흔히 부리는 속임수 중 하나로, 이주자들에게 비합법적 방식으로 국경을 넘는다고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그들에게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고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었다고 믿게 만든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코요테가 이주에 출구를 주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도우미, 가이드, 심지어 믿을 만한 사람이나 ‘여행의 대부’로 받아들여진다.¹⁷⁾ 이주 경로로 움직이는 방식은 인적 이동에 제한을 가한 결과로, 글로벌 자본주의가 쉽게 착취할 수 있는 취약한 인구에게 강요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듯, 인력밀수는 강제된 이동으로서, 이 개념이 이주의 원인뿐 아니라 이주의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주자들은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국경을 통과하며 움직일 수밖에 없다. 가르테니아 차베스 누네스와 하비에르 아르센탈레스 이에스까스는 “탈출을 압박한다기보다는 탈출하는 방식을 강제한다는 의미에서”¹⁸⁾ 비합법적 이동을 설명하고 있다. 국가를 넘기 위

17) M. Ruiz y S. Álvarez: ob. cit.

18) G. Chávez Núñez y J. Arcentales Illescas: 《Movilidad humana, irregularidad y 'tráfico ilícito de migrantes'》 en *Ecuador Debate* No 97, 2016, p. 72.

해서는 영사 사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밀수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다. 비자에서 자유로운 장소를 찾아다니며 발견한 복잡한 경로는 수송 경로로, 인력밀수 루트로 변한다. 그래서 이동, 월경, 일정 장소에서의 거주를 조율해주는 사람들과의 협의는 오래가지 못한다.

칠레까지 수송 루트는 일련의 폭력으로 특징 지워진다. 국경 통과를 허가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국경 경찰이 있다. 게다가 코요테는 때때로 심리적 육체적 폭력을 통해 상황과 시기, 교통수단, 숙박을 통제한다. 또한 젠더 폭력이 있는데, 정보를 숨기거나 여성을 버리는 남성 파트너에 의해 행해진다. 이 상황은 특히 여성의 경우, 채무를 지고 돈 없이 도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지나 온 길이 심각하게 불합리하다는 문제도 있다. 말하자면 어려운 지형을 통과하거나 목적지와 멀리 떨어진 도시를 지나가는 등의 일이다.

그래서 인력밀수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일은 이주자의 비합법화에 일조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주 통제 기관은 이주자들이 인력밀수에 동의했다는 점을 빌미로 그들이 희생자임을 고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법률용어로 ‘이주자 인력밀수’라는 개념은 인적 이동의 착취 시스템으로, 단순히 일종의 조직망이나 ‘국제적 조직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삶의 취약성에 반응하는 복잡한 제도로서,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서도 재생산되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다.

결론

라틴아메리카 이주 정치학은 인적 이동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그렇다고 비이동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정에 탈출구를 찾으며 착취당한 채 지내고,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과 인종차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이주자들, 특히 이동 중에 있는 사람들을 비합법화하는 데 기여한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국경 폐쇄는 이주 정치학이 이미 구축해 오고 있던 것을 강화시켰다. 이주자들의 취약성을 키우고 그들을 위협에 노출하는 것이다. 이렇듯 팬데믹 시기에는 라틴아메리카는 북의 거인을 흉내 내고 있다. 그곳의 비합법 이주자는 대부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에서 온 사람들로 1천2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 그들은 언제든지 체포되어 송환될 위협 아래 살아가고 있다. 시각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 차별 관점에서 인력밀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을 그만두고, 이것과 연계된 인적 수송의 밀도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은아 옮김